

## ‘산업재해예방! 농·축산업 종사자까지 확대’

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농촌진흥청과 협약 체결 —

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이 첨단기술과 건강, 관광, 에너지와 연계한 새로운 가치창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.

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의 주역으로서 미래의 유망한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 하지만, 여전히 농·축산업 종사자는 농기계에 의한 사고와 농약·비료 사용 증가, 동·식물과의 접촉 등에 따른 다양한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.

산업통계에 따르면, 지난해 농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645명이고, 이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다.

\* 최근 5년간 농업(축산업 포함) 산업재해 발생 현황

구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
재해자수	483	444	527	620	645
사망자수	8	8	12	11	11

특히, 농·축산업의 재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재해예방활동 영역을 기존의 제조·건설·서비스업뿐 아니라 농·축산업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.

이에 10.25(화) 농촌진흥청 본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농촌진흥청은 농·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협약체결에 따라, 공단과 농촌진흥청은 △ 농·축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, △ 안전보건기술 및 교육, △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, △ 안전보건 문화운동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

#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

- 전 업종에서 “유해·위험설비”를 설치·이전·변경할 때 제출 -

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유해·위험설비\*를 설치·이전·변경할 경우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하고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**\*유해·위험설비 : 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(국소배기장치, 밀폐설비, 전체환기장치)**

고용노동부는 「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고, 이를 10월 18일(화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*※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도 :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·위험설비를 설치·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·제출토록 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**

이에 따라, 유해·위험설비를 새로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·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·설비 규모,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,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,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.

## 「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」

### 주요 개정내용

#### □ 추진 배경

- 유해·위험설비에 대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제조업으로 한정하고, 환기설비(국소배기장치, 밀폐설비, 전체환기장치) 중 국소배기장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 취지에 맞게 모든 업종과 모든 환기설비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

#### □ 주요 개정내용

- 유해·위험설비\*에 대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「제조업」에서 「모든 업종」으로 확대\*\*

\* 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장치, 국소배기장치

\*\* 고시명 개정: 제조업 → 제조업 등

- 유해·위험설비 중 “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”의 범위를 현행 ‘국소배기장치’ 외에 ‘밀폐설비’ 및 ‘전체환기설비’를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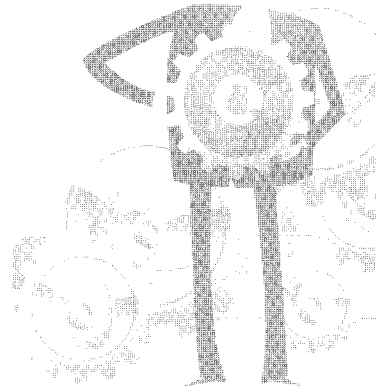
\*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내용을 반영

- 계획서 작성자의 자격 완화 및 심사자의 자격 확대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(9년) 이상 근무경력자에게도 계획서 작성 자격을 부여

\*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학력규제완화 요청에 따름

- 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에 해당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



#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도

## 1. 제도 개요

-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 · 위험설비를 설치 ·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계획서를 작성 · 제출케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
- ※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(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)

## 2. 제출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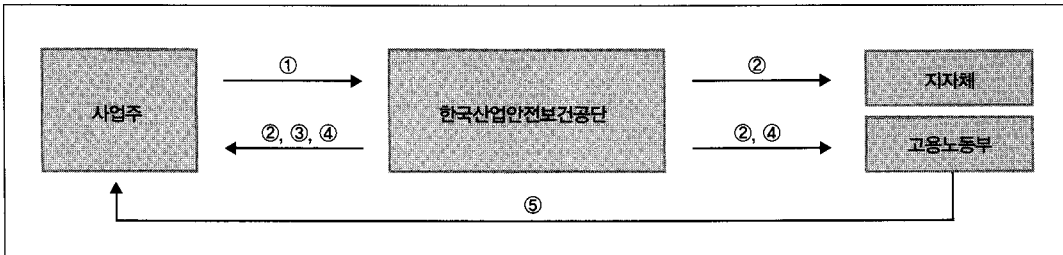
- 아래의 업종 또는 유해 · 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 ·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해당 유해 · 위험설비는 제출 면제
  - (업종) 2개 업종(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
    - \* 현행 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
    - \* (8개 업종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식료품 제조업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, 기타 제품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, 가구 제조업
  - (유해 · 위험설비)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 장치, 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환기설비

## 3. 제출시기 · 서류 등

- 제출자 :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- 제출시기 : 해당 공사착공 15일 전까지
- 제출 서류 및 방법
  - 서류 :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(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 및 첨부서류 2부

- 방법 : 사업장 소재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

#### 4. 심사 및 확인절차



- ①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
- ② 심사결과 통보(사업주에는 제출 후 15일 이내,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는 부적정 판정에 한함)
- ③ 확인 일정 통보 및 현장 확인
- ④ 확인결과 통보(사업주에는 5일 이내, 고용노동부에는 부적합 판정에 한함)
- ⑤ 행정조치(②부적정 통보 시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, ④부적합 통보 시 작업중지·사용중지 명령 및 시정지시)

#### 5. 기타 참고사항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net)
  - ※ 폴더 선택: ▶안전사업 ▶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▶자료실
  - 관련 법령(고시), 계획서 서식, 작성 예시 다운로드 가능
- 문의처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☎